산업통상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12. 2.(화) 06:00 < 12. 2.(화) 석간 > 배포 2025. 12. 1.(월)

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 강화,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개정법률안 공포

-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, 데이터플랫폼 구축 법적 근거 마련 등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개정법률안(허성무 의원 대표발의)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.

이번에 공포된 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❶ 발주청의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(법 제31조제4항 신설), ❷ 엔지니어링산업 디지털화 지원(법 제8조의2, 제9조제4항 신설), 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 간주제 도입(법 제21조 및 제23조 개정) 등이다.

❶ (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)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❷ (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지원)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AI 확산을 위해 '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*' 구축·운영을 지원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·관련 단체·기관에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

*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정보, 시설물 모니터링 정보 등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연계·융합·분석·제공을 위한 시스템

❸ (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)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(최초·변경·지위승계)시 30일내 처리하도록 하고, 미처리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리를 간소화 하였다.

동 법은 공포후 6개월후 시행되며, 산업부는 법 시행전 하위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. 산업부는 내년에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'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(2026~2028)'을 수립·시행한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제조산업정책관 엔지니어링디자인과	책임자	과 장	김재준 (044-203-43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시덕 (044-203-434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

구분		주요내용
1.	**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지원** (안 제8조의2, 제9조)	▪ 엔지니어링기술 데이터를 확보·연계·융합·분석·제공할 수 있는 **플랫폼 구축**, **사물인터넷·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 개발·활용에 대한 지원 근거** 신설
2.	**엔사업자 및 엔기술자의 신고 규정 정비** (안 제21조, 제23조, 제26조)	▪ **변경신고 기간**을 종전 30일에서 **60일로 연장** 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(신규, 변경, 지위승계)시 **처리기간(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) 내 수리 여부를 통지**하고, **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**함 ▪ **사업자 신고시 보유 기술인력**의 엔지니어링기술자 **신고 간주 규정 삭제**
3.	**엔사업자 영업 실태조사** (안 제21조의2)	▪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**신고사항 등 확인**을 위해 **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**하고, **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장소에 출입하여 조사**를 할 수 있도록 함
4.	**행정제재 처분 회피자에 대한 신고 제한** (안 제22조)	▪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할 수 없도록 **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**
5.	**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명확화 등** (안 제25조)	▪ 엔지니어링사업자의 **지위승계 시**,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**행정처분**의 효과는 **'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' 승계**되도록 함 ▪ **양수인 등에게** 양도인의 **행정처분 진행 여부 및 이력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**하고, 관련 **확인서류를 발급**받을 수 있도록 함
6.	**표준품셈 등 근거 명확화 및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내역 공개**(안 제31조)	▪ 엔지니어링 **표준품셈 관리기관**의 **지정 및 지원 근거**를 명확히 함 ▪ 발주청은 사업대가기준(산업부 고시)에 따라 발주금액을 산정하고 **산출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**하도록 함
7.	**수수료 및 과태료 규정 정비** (안 제45조, 제48조)	▪ **수수료** 징수대상에 **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**에 대한 근거 추가 ▪ **과태료** 부과대상에 안 제21조의2에 따른 **자료 제출·실태조사 불응** 등을 신설하고, **폐업 미신고자**는 대상에서 **제외**